한국학 제46권 제2호 통권 171호 161~198쪽
doi: 10.25024/ksq.46.2.202306.161

# 조선시대 매리(罵詈) 범죄의 처벌과 입법 양상

심재우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교수, 조선시대사 전공
jinsim@aks.ac.kr

Ⅰ. 머리말
Ⅱ. 『대명률』 매리 조문의 구성과 특징
Ⅲ. 조선시대 매리 범죄의 처벌 사례
Ⅳ. 매리죄 관련 입법의 추이
Ⅴ. 맺음말

## Ⅰ. 머리말

조선시대에 중국 명나라의 『대명률(大明律)』을 형사법규로 사용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대명률』은 중국 법전이므로 내용이 난해한 부분이 적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30권 460조의 방대한 분량을 차지하므로 조선에서는 『대명률직해』, 『대명률강해』, 『대명률부례』 등 다양한 해설서를 편찬해 활용했다. 따라서 조선시대 형사법의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대명률』에 대한 검토가 필수적이다.[1] 본고는 『대명률』 형률 이해의 일환으로 권21의 매리편(罵詈篇) 형률의 특징을 살펴보고, 나아가 이 조항이 실제 조선에서 어떻게 적용되었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매리(罵詈)죄는 상대방에게 폭언이나 모욕을 가하는 범죄를 말하는데, 현대 형법의 모욕죄와 유사하다. 모욕죄는 현행 「형법」 제33장서 명예에 관한 죄를 다룬 제311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공개적으로 사람을 모욕했을 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범죄다.[2] 최근 인터넷의 보급과 SNS를 통한 사람들 간의 소통이 보편화되면서 악플, 성희롱 등을 이 죄로 기소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모욕죄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많은 선진국에서 사문화되거나 폐지되었고, 한국에서도 모욕죄 인정이 매우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본고에서 검토하고자 하는 『대명률』 매리편 형률의 특징과 조선왕조에

※ 이 논문은 2022년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기초연구 공동연구과제로 수행된 연구임(AKSR2022-C09).

1 조선시대 『대명률』의 수용 양상과 운용 과정에 대해서는 조지만, 『조선시대의 형사법: 대명률과 국전』(서울: 경인문화사, 2007) 참조.

2 「형법」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에는 모욕죄 외에도 명예훼손죄(명예훼손, 사자의 명예훼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 관한 내용도 담겨 있다.

서의 매리죄의 적용 사례에 대해서는 조선전기 노비 신분을 종합적으로 다룬 지승종의 연구에서 일부 검토한 것 외에는 실증적인 성과가 아직 제출된 바 없는데,[3] 이는 조선시대 법률과 법체계를 다룬 법제사 연구 자체가 부족한 탓이기도 하다. 다만 조선시대 시기별 법전 편찬의 흐름과 함께 형률 적용과 형사제도 운영의 방향을 정리한 연구,[4] 조선시대 형사사법 체계를 보는 시각과 관련하여 18세기를 명분사회의 심화와 사족 양반의 형사상 특권 강화의 흐름으로 하층신분이나 하급관원에 의한 상급신분 및 고위관원에 대한 범죄를 범분(犯分), 강상윤리(綱常倫理) 위반 행위로 처벌하는 입법이 만들어지고 있음에 주목한 연구[5]가 제출되기도 하였다. 이들 성과를 통해 『대명률』 적용의 구체적인 양상, 조선에서 만든 새로운 형사 입법의 특징 등을 개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참고하였다.

조선시대 매리 범죄와 그 처벌을 다루기 위해 본고에서는 먼저 『대명률』 매리죄의 내용과 구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어 조선시대 해당 형률이 적용된 실제 판례를 추적하고, 마지막으로 매리죄와 관련하여 새롭게 입법이 이루어진 내용을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매리죄와 관련해서 1786년(정조 10)에 「개정비부이졸범분율(改定婢夫吏卒犯分律)」이 새롭게 마련되는데, 이 형률의 제정 배경과 의미를 점검하려고 한다.

자료는 『대명률』과 『경국대전』, 『속대전』, 『전율통보』 등 조선시대 법전을 기본으로 하되, 이와 함께 『조선왕조실록』, 『일성록』, 『승정원일기』

---

3 지승종은 조선전기 노비통제 문제를 다루면서 살인, 구타, 범간 등과 함께 노비의 주인 매리 행위에 대한 형률을 간단히 검토한 바 있다. 지승종, 『조선전기 노비신분연구』(서울: 일조각, 1995), 370~371쪽.

4 조지만, 앞의 책; 심재우, 「조선시대 法典 편찬과 刑事政策의 변화」, 『진단학보』 제96호(2003).

5 심희기, 「18세기의 형사사법제도 개혁」, 『한국문화』 제20호(1997), 205~244쪽.

등 연대기 기록 또한 활용한다. 법전을 통해 해당 형률의 기본 내용을 파악하고, 연대기 기록을 통해서는 매리죄가 적용된 판례의 처벌 사례 확인 및 매리죄와 관련한 새로운 수교가 만들어지는 과정, 의미를 추적하기 위해서이다.

본 연구는 매리죄 판례와 입법을 통한 조선후기 형정(刑政)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며, 아울러 현재 논란이 되는 모욕죄, 명예훼손죄의 이해에도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Ⅱ. 『대명률』 매리 조문의 구성과 특징

조선시대 매리죄의 적용 판례와 입법 양상을 살피기에 앞서 명나라 『대명률』 매리편의 조문 구성과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매리(罵詈)의 뜻이다.

『대명률부례(大明律附例)』에는 매리의 뜻과 관련한 『율해변의(律解辨疑)』와 『대명률직인(大明律直引)』 두 종 법률서의 설명이 제시되어 있다. 즉 『율해변의』에서는 "나쁜 말로 능욕하는 것을 매(罵)라 하고, 더럽고 해로운 말로 서로 헐뜯는 것을 리(詈)라 한다."고 하였으며, 『대명률직인』에서는 "정면으로 배척하는 것을 매(罵)라 하고, 빗대어 비난하는 것을 리(詈)라 한다."고 규정하였다.[6]

위의 『율해변의』와 『대명률직인』에서는 매와 리가 갖는 뉘앙스의 차이를 제시하고 있지만, 사실 위의 표현만 가지고 매와 리 둘 사이의 뜻의

6 『大明律附例』(21) 刑律 罵詈, "辯疑曰 惡言凌辱曰罵 穢言相訕曰詈 直引曰 正斥爲罵 旁及爲詈".

차이를 엄격하게 나누기가 쉽지 않다.[7] 매리라는 단어는 상대방에 대한 심한 욕설이나 모욕 등을 표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매리죄에 대한 연원이다. 욕설을 가하는 매리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는 규정은 이미 당률(唐律)에서도 확인된다. 다만 『당률소의(唐律疏議)』에서는 상대방에게 욕을 하는 매리를 단독으로 규정하는 대신 폭행과 묶어서 구리(毆詈), 혹은 이구(詈毆) 행위로 처벌하도록 되어 있었다.[8] 그러다가 『대명률』에서 말로만 하는 폭언·모욕과 이보다 더 무거운 범죄인 폭행이라는 두 행위를 나누어서 매리와 투구(鬪毆)라는 두 개의 별도 편으로 구성하였다. 즉 매리죄에 대한 것이 단독 편명으로 등장하는 것은 『대명률』이 처음이다. 이는 형률 조문의 정비 작업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예비 지식을 바탕으로 이제 『대명률』 매리편은 어떤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9] 『대명률』 권21 매리편을 보면 제347조에서 제354조에 이르기까지 모두 8개조로 이루어져 있다.

각 조문의 내용을 좀 더 상세히 보면, 먼저 제347조 매인(罵人)은 일반적인 매리죄 처벌 규정이다. 즉 타인을 욕하면 태형 10대, 서로 욕하면 각각 태형 10대로 다스린다는 내용이다. 아래에 관인(官人), 노비(奴婢) 등이 매리한 경우의 규정이 있으므로 이 제347조는 동일 신분 인물들 간의 매리

---

7 최근 번역된 『대명률직해』에서는 罵와 詈는 서로 비슷한 말이므로 굳이 구분하여 사용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매리에 대한 위 『율해변의』와 『대명률직인』의 풀이 또한 『대명률직해』를 재인용하였다. 한상권·구덕회·심희기·박진호·장경준·김세봉·김백철·조윤선(역주) 『大明律直解』 4(서울: 한국고전번역원, 2018), 20쪽 참고.

8 『唐律疏議』(21~24) 鬪訟篇 참고. 구체적으로 毆詈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조문은 제326조,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334조 등이며, 詈毆라는 표현은 제337조에 나온다.

9 본고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대명률』과 『대명률직해』의 편명, 조문번호 등은 모두 한국고전번역원에서 최근 번역한 『대명률직해』에 의거하였음을 밝힌다. 한상권 외(역주), 『大明律直解』 1~4(서울: 한국고전번역원, 2018); 한상권 외(校點), 『校勘標點 大明律直解』(서울: 한국고전번역원, 2018).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제348조 매제사급본관장관(罵制使及本管長官)은 관리나 군인에 대한 매리 행위의 처벌 규정이다. 즉 황제의 명을 받아 내려간 사신[制使]을 지방 관리가 매리한 경우, 부민(部民)이 자신의 수령을 매리한 경우, 군사(軍士)가 자신의 지휘관을 매리한 경우 장100으로 다스리도록 했다. 또 이졸(吏卒)이 소속 장관 및 장관보다 아래인 좌이관(佐貳官)과 수령관(首領官)을 각각 매욕한 경우의 처벌 규정을 담고 있다.

이처럼 제348조는 지방관의 제사(制使)에 대한 욕설, 부민의 수령 욕설, 군사나 이졸의 소속 장관 등에 대한 욕설을 규제하는 조문이다. 다만 욕설을 했다고 무조건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친문(親聞), 즉 피해자가 직접 들은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범죄 구성 요건을 엄격히 하였다. 이는 참소(讒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제349조 좌직통속매장관(佐職統屬罵長官)은 동일 관청의 하급 관리가 상급 관리를 매리한 경우의 처벌 규정이다. 수령관(首領官)이나 통속관(統屬官), 즉 해당 관청의 낭청(郎廳)이나 관할하의 관원이 5품 이상 장관을 욕하면 장80에 처하며, 6품 이하 장관을 매리한 경우는 앞의 형량에서 3등급을 줄이도록 규정하였다. 아울러 좌이관(佐貳官), 즉 지차(之次) 관원이 장관에게 욕을 한 경우의 형량도 실려 있다. 여기서도 피해 당사자가 욕설을 직접 들은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제350조 노비매가장(奴婢罵家長)은 노비·고공의 가장(家長)과 가장 친족에 대한 매리 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이다. 먼저 노비의 매리 행위인데, 노비가 가장을 매리하면 교형, 가장의 기친(期親)이나 외조부모를 매리하면 장80 도2년, 대공(大功)이면 장80, 소공(小功)이면 장70, 시마(緦麻)이면 장60이다. 고공(雇工)이 가장을 매리하면 장80 도2년, 가장의 기친이나 외조부모를 매리하면 장100, 대공이면 장60, 소공이면 태50, 시마이면 태40이다.

위의 조문에서 보듯이 노비의 가장과 가장 친족에 대한 매리 행위는 매우 엄하게 다스렸는데, 규정상 노비가 상전(上典)인 주인에게 욕설을 퍼부어도 사형에 처해질 수 있었다. 엄격한 신분제의 모습을 형률에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다만 고공의 경우는 노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형량이 조금 가벼워서 최고 형량은 장80 도2년에 그쳤다. 그런데 이 조문은 피해자가 노비, 고공의 매리 사실을 친고(親告), 즉 직접 고소해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제351조 매존장(罵尊長)은 나이가 연장이고 항렬이 높은 존속 친족을 매리한 경우의 처벌 규정이다. 내용은 시마친인 형이나 누나를 매리하면 태50, 소공이면 장60, 대공이면 장70으로 처벌하되, 존속(尊屬)인 경우는 각각 1등급을 더한다. 또 형이나 누나를 욕하면 장100이고, 백숙부모, 고모, 외조부모이면 각각 1등급을 더한다. 이 조문은 비유(卑幼)의 존장(尊長)에 대한 범죄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하나로 이 규정 또한 친고가 필수이다.

제352조 매조부모부모(罵祖父母父母)는 직계 존속인 부모, 조부모에 대한 매리 행위 규정이다. 조부모나 부모를 매리하거나, 처나 첩이 남편 조부모와 부모를 매리한 경우 모두 교형에 처한다는 내용이며, 이 규정도 피해자가 친고해야 처벌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다. 유교적 사회인식이 법체계에 반영되어 있었으므로 앞서 본 노비의 가장에 대한 매리와 마찬가지로 부모, 조부모에 대한 매리도 교형에 처하도록 하였다.

제353조 처첩매부기친존장(妻妾罵夫期親尊長)은 처첩의 남편 존속에 대한 매리 처벌 규정이다. 처첩이 남편의 기복친 이하 시마친 이상 존장에게 매리한 경우 형량은 남편이 이들 존장에게 매리한 것과 같다. 또 첩의 남편에 대한 매리와 첩의 처에 대한 매리는 각각 장80이며, 사위[10]의 처부모

10 본고에서는 『대명률집주(大明律輯註)』, 『대명률례언해(大明律例諺解)』를 포함한 대부분의 대명률 주석서처럼 처부모에 대한 매리 행위의 주체를 사위로 보았으나

에 대한 매리는 장60에 처하도록 한다. 여기서도 친고, 즉 직접 고소해야만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354조 처첩매고부부모(妻妾罵故夫父母)는 개가한 처첩이 과거 남편의 조부모, 부모를 매리한 경우, 노비가 옛 가장을 매리한 경우에 대한 규정이다. 정확히는 남편이 죽어 새로 개가한 처첩이 죽은 남편의 조부모, 부모를 매리한 경우 현재 모시는 시부모를 매리한 죄와 같이 처벌하고, 노비가 옛 가장을 매리하면 범인(凡人), 즉 일반인을 매리한 죄로 처벌한다는 내용이다. 남편이 죽어서 이미 개가한 처첩이라도 죽은 남편 조부모, 부모에게 욕설, 모욕할 경우 시부모에게 한 것과 똑같이 교형으로 무겁게 처벌하게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위 조문에서 노비가 옛 가장에게 욕설, 모욕한 경우 일반인들이 욕설한 것처럼 태10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나, 조선에서는 새롭게 형량을 정하였다. 즉『대명률직해』에서는 노비의 옛 가장에 대한 매리 행위는 가장에 대한 매리 행위[絞刑]에서 2등급을 줄여[11] 장100 도3년에 처하도록 했다. 명에 비해 노비법이 훨씬 엄격했던 조선에서는 노주(奴主) 간의 명분을 더욱 엄중히 여겨 주인에 대한 노비의 범죄를『대명률』보다 무겁게 다스렸음을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Ⅳ장에서 다시 언급하기로 한다.

이상 지금까지 살펴본『대명률』매리편에 나오는 각 조문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1과 같다.

---

Jiang Yonglin은 그 주체를 첩으로 보았다. Jiang Yonglin, *The Great Ming Code* (Washington: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2005). 여러 대명률 주석서의 풀이 및 관련 쟁점에 대해서는 한상권 외(역주),『大明律直解』4, 31쪽 각주 3번을 참고하였다.

**11** 한상권 외(역주), 위의 책, 33쪽.

**표1-『대명률』 권21 매리편의 구성과 내용**

| 번호 | 구성 | 주요 내용 | 형량 | 요건 |
|---|---|---|---|---|
| 347조 | 罵人 | 타인에 대한 매리 | 태10 | |
| 348조 | 罵制使及本管長官 | 지방관의 봉명사신 매리<br>部民의 守令 매리<br>軍士·吏卒의 소속 장관 매리 | 장100<br>장100<br>장100* | 親聞 |
| 349조 | 佐職統屬罵長官 | 낭청, 하급 관리의 소속 장관 매리 | 장80* | 親聞 |
| 350조 | 奴婢罵家長 | 노비의 家長 매리<br>노비의 가장 친족 매리<br>고공의 가장 매리<br>고공의 가장 친족 매리 | 교형<br>장80 도2년*<br>장80 도2년<br>장100* | 親告 |
| 351조 | 罵尊長 | 형, 누나 매리<br>백숙부모, 이모, 외조부모 매리 | 장100<br>장60 도1년 | 親告 |
| 352조 | 罵祖父母父母 | 조부모, 부모 매리<br>妻妾의 남편 조부모, 부모 매리 | 교형<br>교형 | 親告 |
| 353조 | 妻妾罵夫期親尊長 | 처첩의 남편 존장 매리<br>첩의 남편 매리, 첩의 처 매리<br>사위의 처부모 매리 | 장60 도1년<br>장80<br>장60 | 親告 |
| 354조 | 妻妾罵故夫父母 | 처첩의 죽은 전 남편 조부모, 부모 매리<br>노비의 옛 가장 매리 | 교형<br>태10** | |

* 여러 형량 중 최고 형량을 표시한 것이다.
** 『대명률직해』에서는 장100 도3년으로 고쳐 형량을 대폭 상향하였다.

표1에서 알 수 있듯이 8개 조문으로 이루어진 『대명률』 매리편에는 크게 일반인들 간의 매리(제347조), 관원에 대한 매리(제348조, 제349조), 노비·고공의 가장에 대한 매리(제350조), 처첩을 포함한 가족친족 관계에 있는 인물들의 매리(제350~354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담겨 있다. 제347조가 매리죄의 기본적 구성요건이며, 다른 조문은 가중적 구성요건이다.

참고로 지금의 모욕죄와 비교해서 매리죄의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현대 모욕죄의 경우 제3자가 보는 앞에서 모욕 행위가 이루어져야 한다. 즉 모욕죄는 모욕 행위가 공연히 행해져야 하는 반면, 『대명률』의 매리죄는 공연성(公然性)이 필수적인 요건이 아니다. 즉 피해자만 들을 수 있는 장소에서 욕설을 행했더라도 매리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대명률』매리죄가 모욕죄와 유사한 점도 있다. 모욕죄는 친고죄(親告罪)이고 현대 한국 명예훼손죄의 일부는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인데, 매리죄의 경우도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와 유사한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 예컨대 표1에서 보듯이 제348조, 제349조에는 친문(親聞), 즉 피해자가 직접 욕설을 들은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하고, 제350조, 제351조, 제352조, 제353조에서는 친고(親告), 즉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만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12] 즉 지금의 모욕죄처럼 위에 예시한 조문에 나오는 행위는 반드시 친문, 혹은 친고의 조건을 충족해야만 범죄로서 성립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당률의 폭행[毆]과 함께 병칭되었다가 독립한『대명률』매리는 말로 행하는 범죄라는 측면에서 폭행, 살인 등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다른 범죄보다는 형량이 가벼웠다. 하지만 부모와 조부모에 대한 욕설, 노비의 주인에 대한 욕설, 처첩의 시부모에 대한 욕설은 교형, 즉 사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 행위에 대한 형량이 무거운 것은『대명률』신분형법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 Ⅲ. 조선시대 매리 범죄의 처벌 사례

앞 장에서『대명률』매리편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리 범죄 관련 형률의 내용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이제 이 장에서는『조선왕조실록』을 비롯한 연대기 자료를 중심으로 조선왕조에서 해당 형률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12 『대명률』매리죄와 현대 모욕죄를 비교한 이상의 서술은 한상권 외(역주), 위의 책, 20~21쪽을 참고하였다.

알아보고자 한다. 이들 자료에 나오는 개별 판례의 분석을 통해 매리 형률 적용의 구체적인 양상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관련 사료에서 확인되는 매리죄 논란이나 처벌 사례를 관원에 대한 매리, 노비의 매리, 가족·친족간 매리, 기타 등 크게 네 가지로 유형화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 1. 관원에 대한 매리

조선왕조의 관원은 국왕의 위임을 받아 공무를 수행하는 자이면서, 동시에 신분적으로도 높은 지위를 차지한 상층민이었다. 따라서 매리죄 가운데 문제가 되는 것 중 하나가 관원에 대한 욕설과 모욕 행위이므로 이에 대해서 먼저 다룬다. 사례를 분석해보면 관원에 대한 매리는 아래에 제시한 것처럼 크게 관원 상호 간의 매리, 지방 고을 수령에 대한 매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관원들 간에 행해진 매리 행위에 대한 판례이다. 1537년(중종 32) 9월에 국가 행사를 관장하는 관청인 통례원(通禮院)의 종6품 실무 관료인 인의(引儀) 두 사람이 서로 욕설을 주고받다가 사간원의 탄핵을 받는 일이 발생하였다. 두 사람은 조세적(趙世勣)과 유기조(兪起祖)란 인물이었는데, 이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공청(公廳)에서 '용언상힐(庸言相詰) 극구매리(極口罵詈)', 즉 상말로 서로 싸우고 심한 욕설을 주고받은 것이 문제가 되었다.[13]

그런데 다른 관청에 근무하는 관원이나 동급 벼슬의 관원들 간의 매리에 대해서는 『대명률』에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제347조 일반인 간의 매리 때 적용하는 율문을 적용하거나, 제348조와 제349조의

13 『中宗實錄』 32년(1537) 9월 3일.

율문을 비부(比附)할 수 있었다고 본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이들은 배우지 못한 천한 노비들처럼 행동하여 조정 관리로서의 체통을 크게 잃었다는 이유로 체직(遞職), 추고(推考) 처분을 받게 되었다. 매리 형률을 적용하는 대신 두 관원 모두에 대한 징계 조치로 마무리한 것이다.

관원들 간의 매리가 문제가 된 또 하나의 사건으로는 1687년(숙종 13) 6월에 있었던 호남 지역 지방관들 간의 다툼이었다.[14] 이 사건은 호남 여러 고을 지방관들의 유산(遊山) 모임에서 일어났는데, 호남 후영장(後營將) 이하정(李夏禎)과 제원찰방(濟源察訪) 이우진(李宇晋)이 술을 마시다가 서로 욕설을 퍼부은 일이었다. 당시 호남감사가 자리를 함께했는데, 사건이 일어나자 그는 조정에 두 명 모두 파출(罷黜)하기를 청하였다. 그런데 숙종은 영장(營將)을 일개 우관(郵官)이 결코 능멸하여 짓밟을 수 있는 바가 아니라고 지적하며, 찰방 이우진만을 잡아서 추문하여 죄를 주라고 명령한다. 이와 같은 조치에는 영장의 지위는 찰방보다 중하므로 찰방의 영장 능멸을 방치할 수 없다는 국왕 숙종의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

이상 위 두 사례에서 추고 처분을 받은 관리들이 이후에 추가적인 처벌을 받았는지 불분명하다. 하지만 관원들 간 매리 행위가 발생한 경우 『대명률』 매리죄를 적용한 예는 확인되지 않았다. 관원들 간의 매리에는 『대명률』에 규정된 형벌이 아니라 국왕의 징계 조치가 내려졌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15]

---

**14** 『肅宗實錄』 13년(1687) 6월 3일.

**15** 일본 야기 다케시 교토대학교 교수는 조선시대 형벌과 징계를 구분하여 官人의 경우 기본적으로 형벌이 아닌 징계가 행해졌으며, 이 징계는 국왕이 禮의 논리에 의해 행했다고 보았다. 또 그는 징계의 등급을 推考, 罷職, 收告身, 削去仕版·永不敍用, 削黜, 付處, 遠竄, 安置, 圍籬安置, 賜死, 追奪官爵, 孥籍 등으로 체계화하여 이해하였다. 관원들 간의 매리 행위에 『대명률』 규정보다는 국왕에 의한 처벌이 우선된 앞선 사례를 볼 때 야기 교수의 주장은 경청할 만한 내용이라고 본다. 이와 관련한 야기 교수의 견해와 논평에 대해서는 矢木毅, 『朝鮮朝刑罰制度の研究』(京都: 朋友書

둘째, 지방 수령에게 매리 행위를 하여 처벌이 이루어진 사례이다. 잘 알려진 것처럼 군현의 위상에 따라 다양한 품계를 가진 관리들이 파견되었지만, 수령은 해당 고을의 다양한 일을 총괄하고 집행하는 존재라는 점에서 고을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였다. 그런데 수령이 고을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을민에게 욕설을 듣거나 모욕을 당하는 사례가 간혹 발생하곤 했는데, 그 내용과 처리 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원래 지방관을 관내 이민(吏民)이 매리할 경우의 처벌 규정은 표1에서 제시한 것처럼 『대명률』 제348조에 의거하여 최고 장100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조선초기 중앙집권화 추진 과정에서 중앙권력의 대행자인 수령권을 보호, 강화하기 위한 조치의 하나로 세종 대 「부민고소금지법(部民告訴禁止法)」이 법제화되는데, 이에 따라 관내 이민(吏民)이 수령을 고소하거나 또는 수령에 욕설을 가하는 등 능욕할 경우 그 사람을 장100 도3년이나 장100 유3,000리에 처할 뿐만 아니라 파가저택(破家瀦澤)이라 하여 그 집을 허물어 집터를 연못으로 만들고 범인 가족 전체를 고을에서 쫓아내는 부가형(附加刑)을 시행하였다.[16] 이처럼 「부민고소금지법」이라는 일종의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수령에 대한 매리 행위는 다음의 사례에서 보듯이 『대명률』이 아닌 「부민고소금지법」에 의거하여 처벌이 이루어졌다.

예컨대 1439년(세종 21) 7월에 형조에서 국왕 세종에게 황해도 해풍군(海豐郡)의 부사직 황득부(黃得富)란 인물의 처벌을 요청한다. 그가 본군 수령을 꾸짖고 욕하여[罵辱本郡守令] 존비(尊卑)의 질서를 잃었다는 이유에서다.

---

店, 2019); 심재우, 「조선시대 형벌과 형정 연구의 진전을 위한 모색: 矢木毅, 『朝鮮朝刑罰制度の研究』(2019, 朋友書店) 분석을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제118호(2020a) 참조.

16 「부민고소금지법」 그리고 수령을 고소하거나 능멸한 자에 대한 훼가출향, 파가저택 양상에 대해서는 심재우, 「조선시대 毁家黜鄕의 성격과 전개 양상」, 『한국학』 제43권 제4호(2020b)를 참고하였다.

이에 황득부는 『대명률』 매리 조에 의거하여 장형 100대를 맞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부민고소금지법」에 의거하여 장형 100대에 더하여 그의 처자(妻子)까지도 출향(黜鄕) 조치되기에 이르렀다.[17]

1457년(세조 3) 10월에는 충청도 전의현의 백성 최난금(崔難金)이 수령의 송사 처리에 불만을 품고 수령이 남의 부탁을 받고 불공정하게 송사 처리를 했다고 수령 면전에서 비난하였다. 이에 충청감사의 요구에 의거하여 세조는 그를 출향저택(黜鄕瀦宅)시켰다.[18]

아전들의 수령 매리 행위 또한 위에서 소개한 고을민과 동일하게 「부민고소금지법」으로 처리되었다. 1453년(단종 1) 12월에 경상도 합천군의 서원(書員) 강중(姜中)이란 인물이 술쌀[酒米]을 횡령하였다가 수령에게 적발되는 일이 있었다. 그런데 심문 과정에서 그가 수령에게 심한 욕을 하는[極口罵辱] 상황이 벌어졌다. 결국 「부민고소금지법」에 의거하여 장형 100대를 집행하고, 그를 고을에서 쫓아내고 파가저택을 시행하고 황해도 참(站)의 일수(日守)로 보내는 형벌이 내려졌다.[19]

이상 소개한 여러 사례에서 보듯이 수령에 대한 고을민들의 매리 행위는 『대명률』 매리죄를 적용하는 대신 「부민고소금지법」을 적용하여 훨씬 더 무겁게 단죄하였음을 알 수 있다.

## 2. 노비의 매리

앞에서 중앙관원들 간의 매리, 그리고 지방관 중에서 특히 수령에 대한 관하민들의 매리 사례를 살펴보았는데, 이번에는 노비가 저지르는 매리죄

17 『世宗實錄』 21년(1439) 7월 1일.
18 『世祖實錄』 3년(1457) 10월 9일.
19 『端宗實錄』 1년(1453) 4월 16일.

처벌 관련 판례를 짚어보기로 한다. 이에 관한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기록에 따르면 노비가 저지르는 매리 행위를 『대명률』 형률에 의거하여 무겁게 처벌하려는 모습이 확인된다.

먼저 노비의 주인에 대한 매리 사례이다. 1490년(성종 21) 5월에 전라도 능성에서 산비(山非)라는 이름을 가진 사비(私婢)가 주인과 다투는 과정에서 주인이 입은 옷을 찢은 죄목으로 고을의 옥에 수감되고 중앙 조정에까지 알려지게 된 사건을 보자.[20] 실록 기사에 따르면, 이 사건에서 비 산비가 이런 일을 벌인 이유는 주인이 자신의 오라비인 노(奴) 산동(山同)의 머리를 휘어잡고 괴롭혔기 때문이다. 형조에서는 법정 최고형인 참대시(斬待時)에 해당한다고 보았는데, 산비의 행위를 노비가 주인을 폭행, 살해하려고 한 것으로 간주한 것이다. 또 다른 관리도 산비의 행위가 매리, 즉 노비의 주인에 대한 욕설이나 모욕에 해당하므로 사형[絞刑]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성종은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산비를 사형에서 감해서 유배를 보냈다.[21]

앞과 달리 율문에 의거하여 사형에 처해진 사례도 있었다. 1535년(중종 30) 1월의 실록 기사에 따르면, 윤손(尹孫)이란 사노(私奴)가 주인에게 욕을 하며 죽이겠다는 말을 내뱉었다가 교대시(絞待時)로 조율되어, 최종적으로 삼복(三覆)을 거쳐 처형된 일이 있었다.[22] 이 사건은 사건이 발생한 지역과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분명하게 파악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윤손이 욕설[罵詈], 능욕(凌辱)하면서 결정적으로 주인을 찔러 죽이고 쏘아 죽이겠다고 극언을 했기 때문에 정상 참작과 감형(減刑) 없이 『대명률』 제350조 노비의 주인 매리 형량인 교형(絞刑)으로 처벌한 것이다.

---

**20** 이 사건에 대해서는 『成宗實錄』 21년(1490) 5월 12일 기사 참조.

**21** 사료에서는 '감사(減死)'라는 표현만 나오지만 이는 감사정배(減死定配), 즉 사형 다음의 형벌인 유배형에 처했음을 의미한다.

**22** 『中宗實錄』 30년(1535) 1월 21일.

사례가 많지 않아 일반화하는 것은 위험하지만 노비의 주인에 대한 매리 행위는 매우 엄중하게 인식, 처리되고 있음을 읽을 수 있다. 매리 행위를 저지른 노비를 유배형으로 감형시키기도 했지만, 율문에 의거하여 실제로 법정 최고형을 내린 경우도 있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한편 노비의 존속(尊屬)에 대한 매리도 위와 같은 분위기에서 다루어지고 있었음을 아래에서 제시한 어머니에게 욕설을 한 내수사(內需司) 소속 노(奴)의 처리 과정에서도 엿볼 수 있다.

1489년(성종 20) 8월에 자신의 어머니에게 욕을 하고 불손했다는 이유로 처벌된 내수사의 노 김이만(金伊萬)라는 인물의 사건이 논란이 되었다. 사건의 전후 사정은 이렇다. 김이만이 어미에게 욕하고 꾸짖었다는 이유로 이웃 사람이 김이만을 고발하였는데, 그가 체포되어 세 차례나 신장(訊杖)을 맞고도 자백하지 않고, 여기에 더해 김이만의 어미 건리덕(件里德)도 아들 김이만이 자신을 매리한 일이 없다고 진술하여 사건 처리에 어려움이 생겼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대명률』 제352조 부모에 대한 매리는 피해를 입은 부모가 친고해야 처벌할 수 있었기 때문인데, 이 사건에서 보듯이 사실 어머니가 자식의 욕설을 관아에 들추어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성종은 어미가 지식의 허물을 숨기는 것은 천리(天理)라 언급하며 김이만을 부모 매리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았다. 대신 이웃 사람이 고발한 것에서 보듯이 김이만이 부모에 불손한 것은 분명하므로 그냥 석방하지 않고 장형 100대에 처하도록 전교(傳敎)하였다.[23] 김이만 입장에서는 매질을 피할 수는 없었지만, 그나마 어머니의 적극적인 부인으로 교수형을 면할 수 있었던 셈이다.

이상 몇 가지 사례에서 보듯이 조선왕조에서 노비의 매리 행위는 무겁게

23 『成宗實錄』 20년(1489) 8월 3일.

처벌하였는데, 특히 노주(奴主) 문제는 강상에 관계되는 중대 사안이었다. 신분질서가 강고하게 유지되던 당시에 하층 신분의 상층 신분에 대한 범분(犯分) 행위는 분수와 명분이라는 중요한 가치를 해치는 행위로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인식이 공유되고 있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 3. 가족·친족 관계에서의 매리

『대명률』 매리편 조문의 특징을 분석한 I장에서 본 것처럼 매리죄 조문 중에는 가족, 친족 사이의 매리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적지 않다. 따라서 위에서 살펴본 관원에 대한 매리, 노비의 매리 문제에 이어 이번에는 가족, 친족 관계에서 발생하는 매리 사례를 추적해보기로 한다. 이하에서 서술하겠지만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조부모, 부모를 비롯한 존속에 대한 비속의 매리, 그리고 남편과 시댁 어른에 대한 처첩의 매리 행위 두 가지가 쟁점이 되고 있다.

먼저 자식의 부모에 대한 매리죄 처벌 사례를 보자. 『대명률』에서 자손의 조부모, 부모에 대한 매리 행위는 교형에 처해지는 중범죄였는데, 실제로 이 문제로 처벌을 받는 사례가 몇 건 확인된다. 그중 하나가 1438년(세종 20)에 이적(李迹)이 부친 이행(李行)에게 매리하였다는 이유로 그 처벌을 두고 조정에서 논란이 된 사건이다.

이행은 대제학을 지낸 인물인데, 이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른 이유는 이행이 죽고 나서 자손들 간에 재산 분쟁이 일어나면서부터다.[24] 이행이 죽기 전에 아들 이적이 그에게 욕설을 하는 편지를 보낸 것을 조카가 폭로한 것이다. 의금부에서는 자식이 부모에게 매리한 죄로 즉시 교수형[不

24 『世宗實錄』 20년(1438) 10월 27일.

待時絞에 처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대해 영의정 황희는 이행과 이적 사이가 이행 죽기 전에 회복되어 부자간의 은의(恩義)가 영절(永絶)되지 않은 점, 아버지 이행이 이미 죽어 친고죄(親告罪)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참작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25] 마침내 세종은 사형에서 한 등급을 경감하여 이적을 장100 유3,000리로 함길도 경원부(慶源府)에 유배보내기로 결론을 내렸다.[26]

1528년(중종 23)에도 부모에게 행한 욕설이 적발되는 일이 있었다. 충청도 회덕현(懷德縣)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향리 신분인 기관(記官) 방지손(方枝孫)의 악행이 문제가 되었다. 즉 그가 부모에게 마구 욕설을 가했다는 이유로[極口罵詈] 관찰사가 조정에 장계(狀啓)를 올린 것이다.[27] 이 사건은 이후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지방의 작은 고을에서 발생한 사안이 조정에 보고될 정도로 부모 매리죄가 중대한 사안으로 다루어지고 있었음을 여기서 짐작할 수 있다.

이상 두 사건과는 결이 조금 다른 사례도 확인되는데, 정적 제거나 정치적 공격 목적으로 상대에게 부모·조부모 매리죄 혐의를 가하는 경우이다. 세종 대 무과에 합격하여 사정(司正) 벼슬에 올랐던 민서(閔敍)가 매리죄로 처벌받은 것이 그런 예라 할 수 있다. 사건은 이렇다. 1448년(세종 30) 6월에 민서가 어머니를 구타하고 불손한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탄핵되었는데, 그가 누이와 싸움을 벌이고 말리는 어머니를 밀쳐 땅에 자빠지게 하는 등의 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다.[28] 그런데 전후의 실록을 검토해보면 민서가

---

25 『世宗實錄』 20년(1438) 8월 14일; 『世宗實錄』 20년(1438) 9월 21일.

26 『世宗實錄』 20년(1438) 11월 3일. 참고로 이 사건이 있은 지 12년 뒤인 세종 32년에 이적은 유배에서 풀려났다. 이에 대해서는 『世宗實錄』 32년(1450) 윤1월 29일 참조.

27 『中宗實錄』 23년(1528) 2월 2일.

28 『世宗實錄』 30년(1448) 6월 10일; 『世宗實錄』 30년(1448) 10월 2일; 『世宗實錄』 31년(1449) 5월 20일.

어머니 매리죄로 조사받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그가 탄핵되기 며칠 전에 있었던 이조정랑 이영서(李永瑞)와의 일 때문이었다. 이영서가 민서가 아끼는 기생집에 갔다는 이유로 아우와 조카를 대동하여 이영서를 결박하여 심하게 구타하고 형조로 끌고 감으로써 이영서에게 심한 수모를 안긴 일이 그것이다.[29] 이로 인해 민서는 여러 관리들의 미움을 받아 어머니를 구타한 일이 들추어졌고, 의금부에 붙잡혀 여러 차례의 모진 국문을 당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어머니 구타는 무혐의로 처리되었으나, 세종은 그를 어머니에게 불손한 행동을 했다는 죄목으로 사형에서 한 등 감하여 장100 유3,000리에 처하고 여연부(閭延府)에 충군(充軍)시켰다.[30] 민서의 어머니가 민서의 불효 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의 석방을 끊임없이 호소했는데도 불구하고 1년여의 고문 끝에 이와 같은 처분을 내렸다.[31]

한편 중종 대 유자광(柳子光)의 아들 유진(柳軫)이 어머니를 매리한 죄목으로 처벌받은 사건도 앞의 민서에 대한 공격과 마찬가지로 다분히 정치적 목적이 개입되어 있었다고 봐야 할 것 같다. 아버지 유자광이 죽은 뒤 유진이 어머니에게 불효하며 형제간에 우애를 이루지 못했다는 이유인데, 그런 정황이 조부모, 부모에게 매리한 경우의 율문을 적용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금부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유진은 전가사변(全家徙邊)의 중형에 처해졌다.[32]

지금까지 자식의 부모 매리죄 처벌 사례를 살펴보았는데, 율문에 규정된 것과 마찬가지로 부모에 대한 매리 행위는 중대 사안으로 인식되었음이 확인된다. 또한 형률상의 문제를 넘어 정치적 목적에서 이 문제가 부각되기

---

29 『世宗實錄』 30년(1448) 6월 5일.

30 『世宗實錄』 30년(1448) 10월 2일; 『世宗實錄』 31년(1449) 6월 14일.

31 당시 민서의 처벌이 지나치다는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군자판관 조휘의 상소문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世宗實錄』 31년(1449) 5월 28일 참조.

32 『中宗實錄』 8년(1513) 6월 6일; 『中宗實錄』 8년(1513) 7월 27일; 『中宗實錄』 8년(1513) 8월 12일; 『中宗實錄』 8년(1513) 9월 5일.

도 했으며, 친고죄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이유로 친고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다만 법정형인 사형에 처하는 사례는 없고, 모두 한 등급을 낮춰 유배형에 처한 것도 조선시대 부모 매리죄 처벌의 중요한 특징의 하나였다.

자식의 부모 매리 행위에 이어 다음으로 처첩의 시댁 식구에 대한 매리죄 처벌 사례를 추적하기로 한다. 앞의 『대명률』 규정에서 본 것처럼 자식의 부모, 조부모 매리와 마찬가지로 처첩의 시댁 식구에 대한 매리도 율문에 중형을 부과하게 되어 있었는데, 특히 처첩의 시부모에 대한 매리는 자식의 부모에 대한 매리와 마찬가지로 교형(絞刑)이 법정형이었다.

이와 관련해서 먼저 살펴볼 사례는 현종 대 유학 유탁무(柳卓茂)의 며느리 성비희(成非喜)의 시부모에 대한 불순(不順) 행위 처리 결과이다. 사건은 1668년(현종 9) 9월에 유탁무 부부가 갑자기 죽는 일이 생기면서 드러났다. 그 과정에서 유탁무 아내가 며느리 성비희와 서로 싸우다가 다쳐서 죽었고, 이에 충격을 받은 유탁무 또한 자살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논란이 된 것이다.[33] 유탁무 부부의 죽음이 고부 간의 갈등으로 인한 것이 밝혀지자 며느리 성비희는 강상에 관계된다는 이유로 의금부로 압송되어 삼성추국을 당하였다. 조사 결과 성비희가 시부모를 해치거나 시부모에게 욕을 하지도 않았지만, 평소 시부모에게 불순했을 뿐만 아니라 그 시어머니가 화병이 나서 결국 죽게 되었다는 말이 남편 유진(柳軫)의 공초에서 나왔다.[34] 이에 현종은 폭행이나 매리가 아닌 시부모에 불손했다는 이유로 『대전후속록(大典後續錄)』의 "죄가 강상을 범하여 정리(情理)가 매우 깊고 중한 자는 전가사변하여 정배한다."는 율을 적용하여 성비희를 강계(江界)에 정배시키고, 남편 유진 또한 집안을 다스리지 못한 죄를 물어 가까운 곳에 도배(徒配)

33 『顯宗實錄』 9년(1668) 9월 16일.
34 『顯宗實錄』 9년(1668) 9월 22일; 『顯宗實錄』 9년(1668) 10월 3일.

하였다.[35] 이 사례는 매리죄가 적용된 것은 아니지만 며느리의 시부모와의 갈등은 언제든지 불손, 매리 등의 죄목으로 처벌받을 수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처첩의 매리 행위와 관련하여 또 하나 살펴볼 것은 처의 남편에 대한 매리죄 처벌 사례이다. 사실 『대명률』에는 첩이 남편에게 매리할 경우의 형량은 제시되어 있지만, 처가 남편에게 매리한 것에 대한 조문이 없다.[36] 사실상 부부간의 사소한 문제까지 형률로 다스리지는 않아야 한다는 관념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37] 그렇다면 관련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처리되었을까?

1517년(중종 12) 윤12월에 판관(判官) 홍태손(洪泰孫)은 아내 신씨(申氏)가 자신에게 욕설을 가하는 등 부도(婦道)를 손상시켰다[侵辱罵詈 以虧婦道]는 이유로 이혼을 제기하여 논란이 되었다. 당초 예조에서는 그의 이혼 요구를 수리하지 않았다. 그러나 홍태손이 사헌부에 다시 소송을 제기하자, 결국 국왕 중종은 부인 신씨에게 장형 100대로 의율하되 장(杖)을 수속(收贖)하고, 둘은 이혼시키라는 명을 내린다.[38] 여기서 그녀가 어떤 죄목으로 의율되었는가는 알 수 없지만, 『대명률』 매리 조문이 아닌 다른 조문으로도 남편에 대한 처의 매리 행위가 법적 처벌 대상이 되고 있음은 분명히 파악할 수 있다.

---

35 『顯宗實錄』 9년(1668) 9월 27일; 『顯宗實錄』 9년(1668) 10월 3일.

36 표1에서 보듯이 첩의 남편 매리죄의 형량은 『대명률』 제353조에 의거하여 장형 80대이다. 한상권 외(역주), 『大明律直解』 4, 31쪽 참조.

37 『律條疏議』에서는 규문 내의 분쟁에 대해서 인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유도하고자 별도의 율문을 만들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 이에 대해서는 한상권 외(역주), 위의 책, 4쪽, 31쪽.

38 『中宗實錄』 12년(1517) 윤12월 20일.

## 4. 기타: 서원 위패에 대한 작변(作變)

지금까지 조선시대 매리죄 적용, 처벌 사례를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이제 끝으로 다소 특별한 사례 하나를 소개하려고 한다. 그것은 다름 아닌 서원(書院)의 위패를 훼손한 행위를 조부모에 대한 매리죄로 처벌한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순조 대 전라도 여산(礪山), 익산(益山) 지역에서 발생하였는데, 『승정원일기』에 나오는 관련 기사를 분석,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808년(순조 8) 윤5월에 전라감사 이조원(李肇源)은 도내 여산과 익산에 있는 두 서원에서 작변한 죄인 송흠선(宋欽先)을 체포, 조사하는 내용을 장계(狀啓)로 보고하였다. 내용은 이렇다. 송흠선은 송시열(宋時烈)의 7대손인데, 여산의 죽림서원(竹林書院)의 이황과 이이 두 개의 위판(位版), 그리고 익산의 화산서원(華山書院)의 송시열 위판(位版) 등 모두 세 개의 위패를 건물 벽에 구멍을 뚫어 훔쳐가서 더러운 곳에 버렸다는 것이다.[39]

송흠선이 과연 어떤 이유로 이런 서원위패 작변(作變)을 감행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당시 이 사안은 지방에서 발생했더라도 조정에 보고해야 할 엄중한 사건이었다. 주지하듯이 조선왕조에서는 각 고을 객사에 있는 국왕을 상징하는 전패(殿牌)를 고을민이 훼손하거나 훔쳐갈 경우 전패작변(殿牌作變)이라 하여 대역 행위에 준해서 매우 엄중하게 처벌했는데,[40] 사실상 이 서원 위패에 대한 훼손 행위도 그에 버금가는 '변괴(變怪)'였기 때문이다.

사건에 대한 전라감사의 보고가 조정에 올라온 후 송흠선에 대한 처벌을

---

**39** 『承政院日記』 純祖 8년(1808) 윤5월 26일; 『承政院日記』 純祖 8년(1808) 윤5월 28일.

**40** 조선후기 전패작변의 여러 사례와 처벌 규정에 대한 분석은 윤석호, 「조선후기 殿牌作變 연구」, 『한국민족문화』 제58호(2016) 참조.

논의하는 과정에서 좌의정 김재찬(金載瓚)은 범인에게 적용할 두 개의 율문을 제시한다. 그중 하나는 『대전통편』에 나오는 "성묘(聖廟), 즉 문묘의 위판을 훔쳐간 자는 참형(斬刑)에 처한다."는 조문, 다른 하나는 『대명률』 매리편의 "조부모에게 매리한 자는 교형(絞刑)에 처한다."는 조문이다. 둘 중 어느 하나로 하더라도 사형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41] 이후 얼마 뒤 송흠선의 자백을 받은 후 형조의 건의에 따라 순조는 최종적으로 『대명률』 매리조에 의거하여 송흠선을 부대시교(不待時絞)로 처단하였다.[42] 송흠선이 선조 송시열의 위패를 훼손한 행위를 『대명률』 제352조 매리조의 조부모에게 욕을 한 행위로 간주하여 교형으로 처벌한 것이다. 이 송흠선 사건은 『대명률』 매리 조문을 적용하여 범인을 실제로 사형에 처한 조선왕조에서 매우 드문 사례라 할 수 있다.

## Ⅳ. 매리죄 관련 입법의 추이

지금까지 『조선왕조실록』을 비롯한 여러 자료에서 확인되는 여러가지 매리 행위의 양상과 그 처벌 사례를 네 가지로 유형화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매리죄가 실제 조선에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관련 쟁점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장에서는 매리죄와 관련한 입법의 추이에 대해 파악하려고 한다. 주지하듯이 조선왕조에서는 『대명률』의 수용 이후에도 필요한 경우 형률 규정을 수정, 혹은 보완하는 수교(受敎)

41 『承政院日記』 純祖 8년(1808) 윤5월 28일.

42 『承政院日記』 純祖 8년(1808) 6월 15일. 해당 기사에서는 송흠선 외에도 작변에 참여한 노 두 명은 전라감사에게 조감을 맡기고, 잘못도 없이 조사받은 이희휴는 석방하는 조치가 내려진 사실이 나온다.

를 통해 입법을 추진한 바 있었다. 매리죄와 관련해서는 새로운 법조문이 어떤 것이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대명률』 형률의 보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가 본 장의 주요 검토 대상이다.

먼저 살펴볼 것이 『경국대전』이다.[43] 『경국대전』 고존장(告尊長) 조에는 매리 행위와 관련하여 두 개 조문이 실려 있는데, 그중 하나는 다음에 보듯이 노비와 고공의 옛 가장[舊家長]에 대한 매리 행위의 형량 규정이다.

> 舊奴婢雇工 毆罵告舊家長者 各減毆罵告家長律二等論.[44]

위 조문은 노비와 고공이 옛 가장을 구타, 욕설, 고발한 경우 현재의 가장을 구타, 욕설, 고발했을 때의 처벌 형량에서 2등을 감한 형량으로 다스린다는 내용이다. 여기서는 구타[毆], 욕설[罵], 고발[告]의 3가지 행위를 포괄하고 있는데, 우리의 관심인 매리에 관한 것만 분석해보자. 앞서 본 것처럼 『대명률』에는 노비가 옛 주인에게 매리한 경우 신분이 대등한 일반인이 상대를 욕설한 것으로 보아 태10으로 다스리도록 규정되어 있었다.[45] 노비가 주인으로부터 해방된 이후에는 노비와 옛 주인과의 관계는 노주 관계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노비의 명분, 분수에 엄격한 조선 관리들은 이 형량이 너무 약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노비의 옛 가장에 대한 매리 행위는 가장, 즉 현 주인에게 매리한 경우의 교형(絞刑)[46]에서 2등급 줄인 장100 도3년에 처하도록 『대명률』에

---

43 표1에서 보듯이 태조 대에 만든 『대명률직해』에서 노비의 옛 가장에 대한 매리 행위에 관한 형량을 『대명률』보다 대폭 상향 조정한 내용이 나온다. 이처럼 『경국대전』 편찬 이전에도 관련 입법이 있었음을 밝혀 둔다.

44 『經國大典』(5) 刑典 告尊長 조.

45 Ⅱ장의 표1 『대명률』 제354조 참조.

46 『大明律』(21) 刑律 罵詈 제350조; 한상권 외(역주), 『大明律直解』 4, 26쪽 참조.

비해 형량을 대폭 상향 조정한 것이다.

노비와 마찬가지로 고공(雇工)의 옛 가장[舊家長]에 대한 매리 행위도 형량을 높였는데, 일반인 매리죄의 태10이 아니라 가장, 즉 현 주인에게 매리한 경우의 장80 도2년[47]에서 2등급만 줄여 훨씬 무겁게 다스리도록 했다. 그것이 바로 장60 도1년이다. 이처럼 위 조문은 조선에서 상하 신분 관계를 보다 엄격히 적용하여 노비와 고공의 옛 가장에 대한 욕설 등 범분(犯分) 행위에 대해 『대명률』보다 형량을 크게 상향하였음을 말해 준다.[48]

『경국대전』 고존장 조에 추가된 또 하나의 매리 관련 조문은 다음에 보듯이 하급 관리의 상급 관리에 대한 매리 문제이다.

> 凡下官罵差等官者 於罵人本律加一等 隔等者 又加一等 以此遞加 至杖一百而止 工商賤隷 勿論有無職 各又加一等.[49]

위의 조문은 하관(下官)이 차등관(差等官)에게 욕설을 한 경우, 즉 관리가 자신보다 한 등급 상급자에게 매리했을 때는 일반인이 매리했을 때의 태10보다 1등을 높여 태20으로 처벌하고, 등급이 높아질수록 처벌 형량을 1등씩 높여서 최종적으로 최대 장형 100대까지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다. 또한 뒷부분은 공상천예(工商賤隷)가 전·현직 관리에게 매리한 경우에는 또 이보다 1등을 높여 처벌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

47 한상권 외(역주), 위의 책 참조.

48 서두에서 소개한 것처럼 심희기는 조선후기 형사사법의 큰 흐름을 명분론의 강화와 사족에 대한 형사법적 특권의 확장으로 본 바 있는데, 『대명률』에 비해 형량을 강화한 『경국대전』의 위 조문을 그의 주장의 논거 중 하나로 제시하였다. 심희기, 앞의 논문(1997), 227~228쪽 참조.

49 『經國大典』(5) 刑典 告尊長 조.

사실 앞서 Ⅱ장에서 보았듯이 『대명률』에도 관리에 대한 매리죄 처벌 규정이 여러 조문에 걸쳐 명시되어 있기는 하다. 하지만 주로 소속 기관 장관급 고위 관리를 매리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조선에서는 관직 등급에 따른 매리죄 형량을 좀 더 촘촘하게 정하기 위해 위 조문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경국대전』에 이어서 매리죄 관련하여 조선에서 새롭게 입법한 또 하나가 대신(大臣)을 추욕(醜辱)한 경우의 처벌 형량을 담은 다음 『신보수교집록(新補受敎輯錄)』의 조문이다.

> 醜辱大臣者 邊遠充軍(康熙戊戌承傳).[50]

위 조문은 1718년(숙종 44)에 만들어진 수교인데, 최고위 관료인 대신(大臣)을 모욕한 경우 가해자를 변원충군(邊遠充軍)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해당 조문에서는 '추욕(醜辱)'이라 표현했지만 이는 욕설, 모욕의 의미를 담은 '매리(罵詈)' 행위와 크게 다를 바 없다.

이 조문이 탄생하게 된 배경을 실록을 통해 살펴보면 사간원 정언(正言) 성진령(成震齡)의 우의정 조태채(趙泰采)에 대한 강한 비판 제기에서 비롯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렇다. 1718년 4월 9일자 실록 기사에 정언 성진령은 상서(上書)를 올려 노론 대신인 우의정 조태채를 겨냥하여 비난을 가하였는데,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청렴하지 못하고 임금의 뜻에만 영합하여 보신(保身)에만 힘쓴다는 주장이었다.[51] 그의 말은 특정 인물을 직접 거론한 것은 아니지만, 조정에서는 그의 비판 대상이 사실상 우의정임을 간파하였다. 결국 이튿날 성진령에 대한 체직(遞職)이 결정되었고,[52] 모욕을 당하자

---

**50** 『新補受敎輯錄』(5) 刑典 推斷 조.
**51** 『肅宗實錄』 44년(1718) 4월 9일.

한양을 떠나 사직을 요청한 우의정 조태채에 대해서는 복귀 명령과 위유(慰諭)하는 조치가 내려졌다.[53]

이 사건을 거치면서 바로 위와 같은 수교가 확정된 것인데, 앞으로 신하들 중에 대신을 추악한 말로 모욕할 경우 변방 지역에 충군(充軍)시킨다는 강한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다. 사실 관리에 대한 매리죄는 장관을 매리한 경우에도 장100에 불과한 『대명률』 규정과 비교할 때 이후 다른 신료들의 대신 추욕 행위를 중대 사안으로 간주하여 별도의 입법을 통해 중형으로 처벌하려고 했음을 의미한다.[54]

한편 조선에서 매리죄 적용과 관련해서 특히 주목되는 것이 정조 대인 1786년(정조 10)의 새로운 입법 조치인데,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로 한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새로 마련된 규정에는 비부(婢夫), 이졸(吏卒), 상천(常賤)의 처상전, 관리, 사족에 대한 매리죄 입법이 담겨 있다.

마련된 입법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 정조 대에 매리죄 규정을 새롭게 만들게 된 배경부터 볼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서울 남부(南部)에 사는 사노(私奴) 득복(得福)의 부친 살해범에 대한 고소 사건때문이었다. 사건을 복원하면 다음과 같다.[55]

사노 득복의 아버지는 김도흥(金道興)이다. 김도흥은 이영규(李永逵)의

---

**52** 『肅宗實錄』 44년(1718) 4월 10일.

**53** 『肅宗實錄』 44년(1718) 5월 15일.

**54** 『신보수교집록』의 이 처벌 규정은 이후 왕자군(王子君)에 대한 추욕 행위까지로 범위가 확대되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속대전』의 다음 조문 참조. 『續大典』(5) 刑典 推斷 조, "醜辱王子君大臣者 邊遠充軍".

**55** 사노 득복(得福)은 부친 사망 사건이 있기 전인 그해 3월에 형조의 가배사령으로 수행하며 액례 이천손과 다툼이 있었으며, 이 때문에 득복은 이영규 대신 이천손을 가해자로 지목하였다. 이 사노 득복 고소 사건에 대해서는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에 관련 기사가 여럿 나오는데, 주요 기사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正祖實錄』 10년(1786) 6월 12일; 『承政院日記』 正祖 10년(1786) 6월 11일; 『承政院日記』 正祖 10년(1786) 6월 13일; 『承政院日記』 正祖 10년(1786) 6월 15일.

소유 노비였는데, 어느 날 이영규가 김도흥에게 곤욕을 당하자 그를 발로 차서 죽였다. 그러자 김도흥의 아들 득복은 죽은 아버지의 원수를 갚아달라고 해당 부(部)에 고소하였는데, 가해자로 이영규가 아닌 평소에 혐원(嫌怨)이 있던 대전별감(大殿別監) 이천손(李千孫)을 지목하였다. 득복이 '노고주(奴告主)', 즉 노비가 주인을 고소했다는 혐의를 피하면서 액예(掖隷)인 이천손 수사 과정에서 자연히 소상전(小上典) 이영규의 죄가 드러나게 하려 의도했던 것이다.

사건에 대한 국왕 정조의 판단은 득복의 생각과 달랐다. 이영규가 득복의 아버지 김도흥을 처벌하다가 죽게 한 것을 정당한 처벌이라고 본 정조는 득복의 고소 행위를 종이 주인을 모함한 패륜 사건으로 간주하였다. 노비의 주인 고소는 교형(絞刑)으로 처벌하는 율문이 있는 당시 사회에서 이는 노주 간의 상하 신분질서를 크게 훼손하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는 인식이 있었다. 결국 정조는 억강부약(抑强扶弱)이 지나쳐 오히려 빈한한 사족이 하민에게 능욕을 당하고 하민들의 완악한 습관을 양성하기에 이르렀다고 한탄하고, 더욱 촘촘하게 노비, 비부, 이졸, 상천 등 하층민의 범분 행위에 대한 규제 조항을 만들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이는 『대명률』, 그리고 조선의 『경국대전』 등 기존 법전에 실린 8개 조문과 함께 새로 만든 2개 조문 등 모두 10개 조문을 각도 각읍에 내려보내 게시하라고 형조에 명령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덧붙여 정조는 해당 조문들을 한글로 번역하여 무지한 자들도 모두 알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도 함께 내렸다.[56]

이렇게 해서 작성된 10개 조문이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수교등록(受敎謄

56 『受敎謄錄』(국립중앙도서관, 古6022-77) 乾 「丙午七月二十二日到付」. 참고로 주인을 고소한 사노 득복은 여러 해 동안 고문을 당한 점, 무지하여 망령된 행동을 한 점을 참작하여 1789년 윤5월에 감사정배되는 선에서 사건이 마무리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承政院日記』 正祖 13년(1789) 윤5월 9일 참조.

錄)』에 실려 있는데, 다소 번잡하지만 당시 게시된 조문의 내용을 분명히 알기 위해 모두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奴婢毆家長者 皆斬 殺者 皆凌遲處死 罵家長者 絞 告家長者 絞.
② 奴婢毆家長之期親及外祖父母者 絞 傷者 皆斬 殺者 皆凌遲處死 罵家長之期親及外祖父母者 杖八十徒二年 告家長之期親及外祖父母者 杖一百.
③ 奴婢毆家長之大功親者 杖八十徒二年 罵者 杖八十 告者 杖九十.
④ 奴婢毆家長之小功親者 杖七十徒一年半 罵者 杖七十 告者, 杖八十.
⑤ 奴婢毆家長之緦麻親者 杖六十徒一年 罵者 杖六十 告者 杖七十.
⑥ 婢夫殺妻上典者 不待時斬 謀殺未行者 不限年 邊遠定配.
⑦ 常賤毆打士族事理明白者 杖一百徒三年 傷者 杖一百流二千里.
⑧ 吏典僕隷告其官員者 品官吏民告其觀察使守令者 杖一百徒三年 誣告者 杖一百流三千里.
⑨ 婢夫告家長者 杖一百流三千里 凌辱者 比此律減三等 杖八十徒二年 非作妻居生於率下者 只杖一百.
⑩ 吏卒罵五品以上官者 杖一百 六品以下官者 減三等 杖七十 事理絶悖者 杖一百徒三年 罵他衙門官 各減一等 常賤罵有品雜歧官及無品士族者 杖六十 事理重者 杖六十徒一年 構捏誣訴者 比犯人加等論.[57]

위의 10개 인용 조문의 앞에 적힌 번호와 밑줄은 필자가 임의로 붙인 것이다. 여기서 ⑨, ⑩ 조문의 뒷부분 밑줄 친 곳이 사노 득복 사건 이후 새로 만든 매리죄 처벌 규정이며, 그 외 나머지는 모두 『대명률』, 혹은 『경국대전』·『속대전』에 이미 실린 기존 조문들이다.

먼저 ①~⑤는 노비의 가장 혹은 가장 가족에 대한 구타[毆], 욕설[罵],

57 『受敎謄錄』(국립중앙도서관, 古6022-77) 乾「丙午七月二十二日到付」. 이 『수교등록』을 비롯하여 본고에서 인용한 법전의 원문 텍스트는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시대 법령자료 사이트(https://db.history.go.kr)를 이용하였음을 밝힌다.

고소[告] 각 행위별로 처벌 형량이 제시되어 있다. 이는 『대명률』의 투구편, 매리편, 소송편에 나오는 것들인데,[58] 행위 유형별로 그리고 피해자의 노비와의 관계에 따른 형량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모아놓은 것이다.

⑥은 비부(婢夫)가 처(妻)의 상전(上典)을 살해한 경우의 처벌 규정으로 『속대전』 형전 살옥(殺獄) 조에 실려 있는 내용이다. 처상전은 비부와 직접 노주(奴主) 관계는 아니지만, 단순히 일반인 간의 살인 사건과는 구별해서 처리해야 한다는 조선 관리들의 의식이 이와 같은 조문을 만들게 된 것이다.[59]

⑦은 상천이 사족을 구타한 경우 일반인 간의 구타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하여 장100 도3년으로 처벌하며, 특히 구타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형량을 더 높여 장100 유3,000리로 다스린다는 내용이다. 이 조문은 『속대전』 형전 추단(推斷) 조에 실린 조문이다.[60]

⑧은 『경국대전』 형전 소원(訴冤) 조에 실린 「부민고소금지법」을 말한다. 이전(吏典)·복예(僕隷)가 소속 관원을 고소하거나, 품관(品官)·이민(吏民)이 관찰사·수령을 고소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인데, 이를 위반하고 고소할 경우 장100 도3년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무고(誣告)한 경우에는 더 무거운 장100 유3,000리로 다스렸다.[61]

---

58 다만 ①의 뒷부분에 나오는 노비가 가장을 고한 경우 교수형에 처한다는 내용은 『경국대전』 규정이다. 원래 『대명률』에서는 형량이 장100 도3년이지만[『大明律』(22) 刑律 訴訟 「干名犯義」(제361조)], 조선에서는 형량을 높여 교수형에 처하도록 했기 때문이다[『經國大典』(5) 刑典 告尊長 조]. 이에 대해서는 지승종, 앞의 책, 353~355쪽 참조.

59 참고로 『속대전』의 이 규정은 1680년(숙종 6)과 1682년(숙종 8)에 만들어진 다음 두 개의 수교를 합한 것이다. 『受敎輯錄』(5) 刑典 殺獄, "殺妻上典 罪甚强盜 不待時處斬(康熙庚申承傳)"; 『受敎輯錄』(5) 刑典 推斷, "婢夫之謀殺妻上典 已行未殺 以凡人謀殺人律論斷 太輕 又不可比用雇工謀殺家長之律 不限年邊遠定配(康熙壬戌承傳)".

60 원래 이 규정은 1554년(명종 9)의 다음 수교에서 유래한 것이다. 『受敎輯錄』(5) 刑典 推斷, "士族常漢之分 甚嚴 庶人賤口 恃其豪勢 毆打士族 全家徙邊之律 申明擧行 而據其兩邊元情 明卞曲直 使無誤蒙重罪(嘉靖甲寅承傳)".

61 『경국대전』에 실린 조문의 전체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經國大典』(5) 刑典

⑨와 ⑩은 앞서 얘기한 대로 기존 형률과 새로운 입법이 같이 나오는 조문이다. 이 중 ⑨의 앞부분에 나오는 비부가 가장을 고소할 경우 장100 유3,000리에 처한다는 내용은 『경국대전』 형전 고존장 조에 실려 있는 것으로 여기서 가장(家長)은 즉 처상전(妻上典)을 말한다.[62] 새로 만든 뒷부분 밑줄 친 곳은 비부가 처상전을 능욕(凌辱)한 경우 장80 도2년에 처하되, 비부 부부가 처상전 솔하에서 거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형량을 장100으로 낮춘다는 규정이다. 기존에 없는 비부의 처상전에 대한 매리, 모욕죄 형량의 신설을 의미한다.[63]

⑩의 앞부분은 이졸(吏卒)이 소속 관리에게 매리할 경우 관리의 품계에 따라 처벌 형량을 달리 한 『대명률』 매리편 제348조의 내용이다. 뒤의 밑줄 친 부분이 새로운 입법인데, 내용은 크게 두 부분이다. 첫째, 이졸의 소속 관리 매리 행위가 매우 심한 경우 앞서 제시한 형량보다 무거운 장100 도3년에 처한다는 내용, 다른 아문 관리에게 매리한 경우는 소속 관리에게 한 것보다 형량을 1등 감해준다는 내용이다. 둘째, 상천(常賤)이 유품잡기관(有品雜歧官)·무품사족(無品士族)을 매리한 경우 장60, 심한 경우는 장60 도1년에 처하며, 허구날조로 무고한 경우는 범인보다 등급을 가중해서 처벌한다는 내용이다.

이상으로 1786년 국왕 정조의 명령으로 각 군현에 게시된 신분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소위 범분(犯分), 멸강(蔑綱) 행위 처벌 규정을 담은 10개

---

訴冤 조, "凡上言 啓下五日內回啓 如或過限 具不卽回啓辭緣以啓 關係宗社及非法殺人外 吏典僕隷告其官員者 品官吏民告其觀察使守令者 竝勿受 杖一百徒三年(品官吏民 則黜鄕) 陰嗾他人發狀者 罪亦如之 其自己訴冤者 竝聽理 誣告者 杖一百流三千里(品官吏民 則亦黜鄕)".

62 『經國大典』(5) 刑典 告尊長 조, "子孫妻妾奴婢告父母家長 除謀叛逆反外 絞 奴妻婢夫告家長者 杖一百流三千里".

63 한편 이와 같은 흐름과 짝하여 비부에 대한 처상전의 징계권을 강화하는 규정이 이보다 7년 뒤인 1793년(정조 17)에 마련되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 참조. 정긍식, 「1793년(정조 17) 〈婢夫定律〉」, 『서울대학교 법학』 제53권 제1호(2012).

조문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확인 결과 기존 조문과 함께 일부 새로운 형률의 신설이 있었고, 신 형률의 주요 내용은 비부, 이졸, 상천의 매리죄 처벌 형량의 마련이었다.[64]

지금까지 매리죄 관련 조선왕조의 새로운 입법을 추적한 결과 『경국대전』 및 1718년(숙종 44), 1786년(정조 10)의 세 번에 걸쳐 『대명률』 매리편을 보완하는 새로운 율문의 제정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새로운 율문은 전체적으로 기존 『대명률』 규정을 근본적으로 수정하는 내용은 아니고, 기존 규정에서 다루지 않은 사안을 추가하거나, 형량을 조선왕조 입법자들의 법감정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이다. 특히 조선후기 신분질서의 이완 속에서 하층민들의 범분, 기강 해이를 막기 위해 정조 대에 노비, 비부, 이졸, 상천의 매리죄 처벌 형량을 좀 더 촘촘히 신설하였다는 사실이 주목된다.[65] 매리죄 처벌과 관련하여 이 사안이 하층민의 하극상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

**64** 이 새로운 입법 내용이 담긴 ⑨, ⑩ 두 개 조문은 별도로 『추관지』에 「개정비부이졸범분율」이라는 제목으로도 실려 있는데[『秋官志』(6) 考律部 定制 「改正婢夫吏卒犯分律」 참조], 이후 고종 대에 편찬한 『대전회통』에 수록된다. 심재우, 「18세기 獄訟의 성격과 형정운영의 변화」, 『한국사론』 제34권(1995), 135~136쪽 참조.

**65** 매리죄 관련 『대명률』 형률과 앞서 살펴본 신설 형률이 『典律通補』(5) 刑律 罵詈에 망라되어 있다. 따라서 이를 통해 조선시대 매리죄의 적용 대상, 범위, 행위별 형량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전율통보』는 1786년 구윤명(具允明)이 당시 쓰이고 있던 『대명률』과 국전(國典)의 형률을 통합하여 만든 법전인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심재우, 「『典律通補』 해제」, 『典律通補』(서울: 서울대학교 규장각, 1998) 참조.

## Ⅴ. 맺음말

지금까지 매리죄에 관한 판례와 입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선시대 매리죄 적용의 양상을 살펴보았다. 앞서 살펴본 대로 매리는 심한 욕설이나 모욕을 가하는 범죄를 의미하는데, 오늘날의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와 유사한 측면이 있었다. 본고에서는 먼저 『대명률』 매리 형률의 내용과 특징을 살펴보고, 이어서 조선시대에 매리 형률을 적용하여 처벌한 사례 및 새로 만든 매리 관련 입법 양상을 추적해보았다. 본론에서 다룬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대명률』 권21의 매리편을 분석하여 매리죄의 구성 요건과 형량을 살펴보았다. 매리편은 모두 8개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일반인들 간의 매리와 함께 관원에 대한 매리, 노비·고공의 가장에 대한 매리, 가족·친족 관계의 인물들 간의 매리 행위 각각에 대한 형량을 담고 있다. 전체적으로 매리 행위는 신체적 위해를 가하는 폭행보다는 형량이 가볍지만, 최고형인 사형(정확히는 絞刑)으로 다스리는 경우도 있었다. 노비의 주인에 대한 매리, 부모에 대한 매리, 처첩의 시부모에 대한 매리가 이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조선왕조실록』을 비롯한 여러 자료를 바탕으로 매리죄로 처벌한 실제 사례를 살펴보았는데, 분석 결과 매리 처벌 판례는 크게 관원에 대한 매리, 노비의 매리, 가족·친족 간 매리, 기타 등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었다. 그 결과 경우에 따라 『대명률』 매리 형률을 있는 그대로 적용하는 대신 다른 법조문을 적용하여 단죄하기도 하였고, 사형에 처하도록 한 형량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사형에서 한 등급 감한 유배형에 처한 경우가 많았다. 필자가 확인한 매리죄로 사형에 처한 사례는 주인에게 심한 욕을 하며 죽이겠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붙잡힌 1535년 사노 윤손의

사례, 1808년 전라도 두 개 서원의 위패를 훔쳐 내버린 서원 위패작변 범인 송흠선의 사례 단 두 경우뿐이다.

마지막으로 매리죄 관련 조선에서의 새로운 입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추적하고, 새롭게 신설한 『경국대전』의 두 조문, 『신보수교집록』을 거쳐 『속대전』에 실린 1718년(숙종 44)의 수교, 1786년(정조 10)의 수교 내용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조선에서 『대명률』 형량을 조선의 현실에 맞게 일부 상향 조정하거나, 특히 노비, 비부, 이졸, 상천의 매리죄 관련 행위에 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왕 정조 대에 이르기까지 하층민들의 욕설·능욕 등 범분(犯分) 행위를 규제하려 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매리는 신체적 물리적 폭력에 비한다면 말로 행하는 모욕, 욕설에 불과한 행위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신분제 사회인 조선왕조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가 따라 중형으로 다스려지거나 사형을 피할 수 없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매리 규정의 보완을 통해 하극상을 막아보려는 입법이 18세기 후반까지 이어졌다는 사실은 조선초기부터 이어진 명분론(名分論)의 유지라는 왕조 사회의 정책 방향이 국왕 정조 대에도 큰 변화가 없었음을 증명한다.

이상 본문의 내용을 요약해보았는데, 끝으로 매리죄 적용 사례 분석을 둘러싼 본고의 한계를 지적해두고 싶다. 필자의 사례 분석은 『조선왕조실록』을 중심으로 중앙의 연대기 자료에 포착된 것들이다. 그러나 실제로 매리죄의 특성상 군현 단위에서 발생하여 조정에 보고되지 않고 수령 직단으로 처리된 경우가 적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런 사례들은 자료의 한계로 확인할 수 없었다. 본고에서 다룬 매리죄를 포함하여 조선시대 형사법 체계에 대한 심층 분석은 향후 좀 더 다양한 각도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1. 1차 자료

『經國大典』. 『唐律疏議』. 『大明律附例』. 『大明律直解』. 『續大典』.

『受敎謄錄』(국립중앙도서관, 古6022-77).

『承政院日記』. 『新補受敎輯錄』. 『典律通補』. 『朝鮮王朝實錄』. 『秋官志』.

2. 단행본

조지만, 『조선시대의 형사법: 대명률과 국전』. 파주: 경인문화사, 2007.

지승종, 『조선전기 노비신분연구』. 서울: 일조각, 1995.

한상권·구덕회·심희기·박진호·장경준·김세봉·김백철·조윤선(역주), 『大明律直解』 1~4. 서울: 한국고전번역원, 2018.

_____(校點), 『校勘標點 大明律直解』. 서울: 한국고전번역원, 2018.

矢木毅, 『朝鮮朝刑罰制度の研究』. 京都: 朋友書店, 2019.

Jiang, Yonglin, *The Great Ming Code*. Washington: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2005.

3. 논문

심재우, 「18세기 獄訟의 성격과 형정운영의 변화」. 『한국사론』 제34권, 1995, 71~143쪽.

_____, 「『典律通補』 해제」. 『典律通補』, 서울: 서울대학교 규장각, 1998, 5~25쪽.

_____, 「조선시대 法典 편찬과 刑事政策의 변화」. 『진단학보』 제96호, 2003, 243~264쪽.

_____, 「조선시대 형벌과 형정 연구의 진전을 위한 모색: 矢木毅, 『朝鮮朝刑罰制度の研究』(2019, 朋友書店) 분석을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제118호, 2020a, 701~733쪽.

_____, 「조선시대 훼가출향(毁家黜鄕)의 성격과 전개 양상」. 『한국학』 제43권 제4호, 2020b, 7~40쪽.

심희기, 「18세기의 형사사법제도 개혁」. 『한국문화』 제20호, 1997, 205~244쪽.

윤석호, 「조선후기 殿牌作變 연구」. 『한국민족문화』 제58호, 2016, 265~297쪽.

정긍식, 「1793년(정조 17) 〈婢夫定律〉」. 『서울대학교 법학』 제53권 제1호, 2012, 267~298쪽.

4. 웹사이트
국사편찬위원회 승정원일기(https://sjw.history.go.kr).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시대 법령자료(https://db.history.go.kr).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https://sillok.history.go.kr).

**국문초록**

이 글은『대명률』매리(罵詈) 형률의 특징과 조선왕조에서의 적용 사례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목표로 하였다. 매리는 상대방에게 욕설이나 모욕을 가하는 범죄를 말하는데, 오늘날의 모욕죄와 유사하다.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대명률』권21의 매리편(罵詈篇)을 분석하여 모두 8개 조문으로 이루어진 매리죄의 구성요건과 형량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조선왕조실록』등 자료를 바탕으로 조선에서 매리죄로 처벌한 실제 판례를 관원(官員)에 대한 매리, 노비의 매리, 가족·친족 간의 매리, 기타 등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판례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매리죄 관련 조선에서의 새로운 입법(立法) 내용을 추적하였다. 이를 통해 조선에서『대명률』형량을 일부 조선의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도 했으며, 특히 신분질서의 문란을 막기 위해 노비(奴婢), 비부(婢夫), 이졸(吏卒), 상천(常賤)의 매리죄 관련 행위에 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방법으로 하층민들의 상층민에 대한 능욕(凌辱)·범분(犯分) 행위를 규제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투고일** 2023. 3. 17.
**심사일** 2023. 4. 21.
**게재 확정일** 2023. 5. 10.
**주제어(keywords)** 매리(罵詈, crimes of cursing or insulting someone), 대명률(the Great Ming Code / Da Ming lu), 형률(刑律, penal codes), 욕설(curse / swearing), 모욕(insult), 범분(犯分, forgetting one's place)

# Abstract


## How Mae'ri (罵詈) Crimes (Crimes of Cursing or Insulting Someone) were Punished in Joseon, and What Kind of Laws were Legislated

**Sim, Jaewoo**

The term "Mae'ri (罵詈)" refers to the act of cursing or insulting someone, which was considered a crime during the Joseon period. This concept is similar to an act of contempt, which is also considered a crime today. This article aims to assess the characteristics of certain penal codes in *The Great Ming Code / Da Ming lu* (大明律) that were designed to respond to "Mae'ri" and examine how they were applied to actual cases in Joseon society.

We first examine the Mae'ri Chapter (罵詈篇) in the 21st volume of *Dae'myeong-ryul*, which comprises 8 clauses that outline the kind of actions that would constitute a Mae'ri crime and the consequences ("sentences") for such offenses.

Second, we analyze real life cases of trial, ruling, and punishment of Mae'ri crimes present in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朝鮮王朝實錄) and other sources. These cases are classified into four categories: Mae'ri acts committed against governmental officials (官員), committed by Nobi servants, committed amongst family members or relatives, and acts perpetrated in other miscellaneous situations.

Finally, we examine how new legislation regarding Mae'ri crimes currdeveloped in Joseon. Apparently, the Joseon government modified some of the sentences dictated for such crimes in *Dae'myeong-ryul* regarding to reflect Joseon's reality. The Joseon government also enacted new laws concerning cases of Mae'ri acts perpetrated by Nobi (奴婢) servants, female slaves' husbands (婢夫), clerks and soldiers (吏卒), and members of the low class (常賤). It was an attempt to control the low-class population and prevent them from forgetting their status [犯分] or insulting their superiors [凌辱], which would disrupt the social order of Joseon society.